

3. 宅地所有上限에 관한 法律中改正法律

법률 제5,410호 1997. 8. 30

주요 골자

- 가. 법 시행 이전부터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주택이 건축된 택지를 소유한 자가 5년간 부담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당해 택지를 부담금의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함(법 제20조제1항제4호의2).
- 나. 주택건설촉진법·임대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등록 또는 허가나 신고 등을 한 사업자에 대한 사업자 등록제도를 폐지함(법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
- 다.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택지를 신탁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탁하는 경우 택지취급허가대상에서 제외함(법 제10조제1항).
- 라. 택지취득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및 제21조의7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 및 토지거래계약신고를 받은 것으로 봄(법 제10조제7항).

개정 이유

그동안 택지소유상한제의 시행과정에서 동 제도의 시행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1가구1주택지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1가구만을 소유한 자에 대한 과도한 제도와 부담을 완화하여 줌으로써 택지소유자의 부담을 경감하여 줌과 동시에 위헌시비를 사전에 예방하고, 그 밖에 택지소유상한제의 시행과 관련된 민원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제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취득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거나 동법 제21조의7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10 조2(택지취득허가의 적용배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이행되는 것에 한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택지를 취득하거나 신탁설립자가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에 의하여 당해 택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신탁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신탁회사
2.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주택조합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11조제2항 후단 및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중 주택건설촉진법·임대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등록 등을 한 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제2항 후단 및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1조제3항의 규정은 법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0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1990년 3월 2일 현재 제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면적을 초과하는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를 소유한 자가 5년치의 부담금을 부과받아 납부한 택지. 다만, 가구별 택지가 1택지인 경우에 한한다.

제29조제1항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10일”을 “20일”로 한다.

제20조제2항, 제26조제1항·제2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제3항·제4항·제34조제1항, 제38조 및 제40조 제2항 내지 제4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제26조제4항, 제34조제3항

및 제35조제4항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및 부칙 제1조중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특별시 및 광역시”로 한다.

② (부담금의 부과대상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7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하는 부담금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 칙

주택회보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